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532

발의연월일: 2021. 6. 3.

발 의 자:김원이・이규민・우원식

유정주 · 최혜영 · 김성주

신정훈・이동주・조오섭

김경만 • 한준호 • 김경협

진성준 • 기동민 • 인재근

의원(15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.

따라서 현재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에게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, 지원 금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, 그 금 액도 적어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 저단가를 결정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 임(안 제35조제3항 신설). 법률 제 호

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본문 중 "내용은"을 "내용, 제3항에 따른 급식최저단가의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"으로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 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(건강한 심신의 보존) ①・	제35조(건강한 심신의 보존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
	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
	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
	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
	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<u>④</u>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	<u> </u>
원서비스의 구체적인 <u>내용은</u>	<u>내용, 제3</u>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제	항에 따른 급식최저단가의 결정
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	등에 필요한 사항은
지원 기준・방법 및 절차 등에	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	
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	